

의안번호	2208332
의 퇴 인	김문수 의원
회 답 일	2025.05.19.
추계번호	25C10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제4항)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 및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항) 교육부장관은 적정 수의 교직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고,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의 정원을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적정 수 교직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함
 -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주된 지표로 하고 있음
 - 교육부는 '18년, '20년, '23년에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였으며¹⁾, '23년의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원 수요,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인력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수립됨

1) 교육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안)」 (2018.4.).

교육부,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안)」 (2020.7.23.),

교육부 보도자료,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 발표」 (2023.4.23.).

- 개정안에 따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교직원 정원이 기존의 교직원 정원을 상회하는 경우, 신규 채용 교직원의 수가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5년 동안 학급 수의 증감률은 동 기간 학생 수의 증감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교육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됨
 - 참고로,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급을 과밀학급으로 정의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2~'24년 연간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²⁾
 -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의 정원을 설정하는 경우 신규 채용 교직원의 수가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표] 최근 5년간 학교급별 학급 수 및 학생 수

(단위: 개, 명)

구분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초등학교	학급 수	123,517	124,047	126,502	125,803	124,796	0.21%
	학생 수	2,693,716	2,672,340	2,664,278	2,603,929	2,495,005	-1.52%
중학교	학급 수	52,195	53,053	53,955	53,915	54,331	0.81%
	학생 수	1,315,846	1,350,770	1,348,428	1,326,831	1,332,850	0.26%
고등학교	학급 수	57,153	56,245	55,797	55,817	55,846	-0.46%
	학생 수	1,337,312	1,299,965	1,262,348	1,278,269	1,304,325	-0.50%

자료: 교육부

- 그러나 현시점에서 교직원 정원 산출의 세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함
 - 개정안은 학급 수, 교육 수요, 교육여건 개선 등 정원 산출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원 산출에 사용할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합리적인 산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움

2)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2021.7.29.). 15-17p

- 또한, 교원 1인당 학급 수를 기준으로 가정하더라도, 교원 1인당 적정 학급 수와 같은 목표 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함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